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충 청 북 도 의 회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상식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1년 3월 3일
- 회부일자 : 2021년 3월 5일

3. 제안이유

- 급변하는 농어업·농촌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도지사가 5년마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육성계획수립, 육성사업 시행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를 둠(안 제9조)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우경수)

가. 제출배경

- 농업·농촌의 고령화·공동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스마트 농업을 종합적으로 육성·발전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는 상황임
- 이에 스마트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스마트 농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농업·농촌 분야 고령화·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을 개선하고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최근 농가 및 경지변화 비교

구 분	전 국			충 북		
	2010년	2019년	증감	2010년	2019년	증감
농가호수(호)	1,177,318	1,007,158	△14.5%	79,963	70,735	△11.5%
농가인구(명)	3,062,956	2,244,783	△26.7%	211,522	162,083	△23.4%
농경지면적(ha)	1,715,301	1,580,957	△7.8%	116,973	101,900	△12.9%

※ 자료출처 : 통계청

☑ 스마트 농업의 효과

- 스마트팜 도입 전 대비 생산량 32.1% ↑, 노동시간 13.8% ↓, 병해충 6.2% ↓
- 농업인의 59.5%는 향후 스마트팜 도입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

※ 자료출처 : '20.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나. 주요 검토내용

1)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상위법령에 대한 저촉여부에 대하여

-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사무·1)로 농업 진흥을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2항제3호에서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 조례 제정 시도(9개) :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 농업과 농촌 및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주요 법적 근거로 하고 있으며,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음

2)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스마트농업”, “스마트팜”등을 정의하고 있음
- 안 제3조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부여함
- 안 제4조는 **5년마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안 제5조는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명시하고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7조는 매년 우수 농어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 안 제9조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 하기 위해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를 두되,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함

다. 종합 검토의견

- 정부국정과제 중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조성분야”에 **스마트 농업***의 대표적 형태인 스마트팜 확산 사업이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도에서는 제천에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및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스마트 농업) '22년까지 스마트팜 시설원에 7천ha, 축산 5천호 보급 및 R&D 투자 확대

- 본 조례는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경지 감소,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